

답 변 서

사건번호 : 2016재누293

[담당재판부:제6행정부]

재심원고(원고) 임그루

우편번호 3632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

휴대폰 010-2878-2177

재심피고(피고)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
우편번호 04147

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(피고보조) (주)KT 대표이사 황창규

우편번호 13606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내 용

헌법 제103조

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.

이렇게 되어있지만

이유 없이 주장과 증거 목살한 것은 헌법과 법률,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되며, 많은 판사님들이 그렇게 한 것은 협력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.

1.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항변도 부인도 없습니다.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헌법 103조를 지켜주세요.

2.청와대 민원 했습니다. 총 11장(뒷면첨부)

노스쿨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.

맺 음

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법률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법률에 정해진 재심절차에 의하여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법률이 정해진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도 아닙니다.

그런데도 주장과 증거 목살했으며, 2013재누148부터는 변론 없이 계속적으로 각하 판결합니다. 이번에도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
☞. 판결 선고기일 변경해주셔서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17년 3월 일

원고: 임 그 루

서울고등법원 귀중